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질문사항 및 긴끼세리사회의 회답

【질문 1 : 세리사 보수결정에 대하여】

- 세리사 보수결정 및 현실화 방안
- 덤핑 등의 이유로, 기존거래처가 다른 세리사에게로 옮겨가는 등 세리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차원에서 조치 또는 징계에 대하여.
주)정화차원이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자에 대하여 그 잘못을 해소하거나, 또는 벌을 주어 향후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입장
정화란, 부정행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

<회답>

1. 일본에서 세리사 보수결정 구조와 그 추이

(1) 세리사보수의 개폐

일본에서는, 2001년(平成 13) 세리사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세리사회 회칙에서 정한 「세리사 보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는, 1980년(昭和 55)에 동법을 개정하여 세리사회에 제정권을 부여하였으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규정한 “세리사의 업무보수 최고 한도액에 관한 기준”에 준거하는 보수규정을 각 세리사회가 제정하여, 운용, 하였다.

그리고 이 세리사 보수규정에는 ①세리사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의 보장 ②세리사의 위법, 부당한 이익추구의 배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平成 10) 이후, 규제완화와 더불어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져, 세리사 등의 업무독점자격에 대하여, 자격자단체에서 작성한 단체의 회칙에서 보수의 기준이나 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공정유효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행정개혁이 제기되었다.

마침, 당시의 세리사법 개정논의에서, 이러한 요청이 더해져 2001년(平成 13) 세리사법 개정에서 세리사 보수규정이 폐지되었다.

(2) 보수규정 폐지 후의 세리사 보수 결정방법

2002년 3월 31일 「세리사의 업무보수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고, 동년 4월 1일 이후, 회원은 자유의사로 자기의 책임아래 보수액을 산정하여 위촉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였다. 단, 세리사의 신용 또는 품위측면에서 합리적인 산정근거에 의한 청구 및 위촉자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綱規 29 條)。

(세리사 업무보수 설정)	
제 29 조 회원(세리사법인의 사원 및 보조세리사인 세리사회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세리사 업무보수를 청구할 때에 합리적인 산정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스스로 보수액 산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업무보수에 관하여 위촉자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참고】 現行綱紀規則 (발췌)

그리고, 업무내용과 보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업무내용과 보수예시 》

업 무		보수예시
세리사업무 (법 2 조①)	세무대리	①세무대리보수 ②조사입회보수 ③불복신청대리 보수
	세무서류작성	세무서류작성 보수
	세무상담	세무상담 보수
회계업무 (법 2 조②)	재무서류작성	①결산서류작성 보수 ②기타재무서류작성보수 (위촉자가 제시한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관공서, 금융기관등에 제출하는 재무서류의 작성업무에 따른 보수)
	회계장부 기장대행	회계장부의 기장대행보수
	기타 재무관련업무	회계상담보수
보좌인의 업무 (법 2 조의 2)	세무소송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 무효확인 소송 등)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 관련 진술업무보수
	세무관련 일반소송	기타 소송관련 진술업무 보수

(3) 세리사 보수규정 폐지 전후의 상황

세리사보수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앞의 세리사 보수규정의 폐지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세리사보수규정 이용(近畿2府4県) (單位: %)

		종업원수	1~2명	3~5명	6~9명	10~14명	15명이상	총평균
이용상황	이용하고 있다		24.84	30.66	34.97	36.31	54.05	31.30
	가끔 이용하고 있다		20.19	25.02	23.90	26.26	16.22	23.36
	특정세목에 한하여 이용		12.02	18.99	21.27	20.11	18.92	17.83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		25.00	17.11	15.11	8.38	6.76	17.70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3.62	6.23	3.51	5.03	4.05	7.33
	미회답		4.33	1.98	1.23	3.91	0.00	2.48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독자적인 보수규정(近畿2府4県) (單位: %)

		종업원수	1~2명	3~5명	6~9명	10~14명	15명이상	총평균
설정상황	정해져 있다		11.74	9.54	6~10人	16.67	27.03	12.16
	장래 정하려고 하고 있다		7.07	7.95	6~11人	10.56	12.16	8.19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62.38	67.69	6~12人	57.22	58.11	64.80
	미회답		18.81	14.81	6~13人	15.56	2.70	14.86
	총계		100.00	100.00	6~14人	100.00	100.00	100.00

●독자적인 산정기준(大阪市) (單位: %)

		연령	20~39歲以下	40~49歲以下	50~59歲以下	60~69歲以下	70세이상	불명	총평균
산정기준	세리사보수규정 일정비율		50.00	53.85	45.83	52.38	22.22	0.00	47.96
	시간제		22.22	23.08	16.67	19.05	0.00	0.00	18.37
	기 타		27.78	23.08	33.33	14.29	33.33	0.00	25.51
	미회답		0.00	0.00	4.17	14.29	44.44	0.00	8.16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보수개정 시기(近畿2府4県) (單位: %)

		종업원수	1~2명	3~5명	6~9명	10~14명	15명이상	총평균
개정시기	매년개정		1.29	1.37	0.79	1.46	1.04	1.21
	2~3년에 한 번 개정		6.61	6.31	8.25	11.65	17.71	7.67
	4~5년에 한 번 개정		10.32	13.35	16.67	20.39	17.71	14.13
	관계처의 실적따라 개정		21.94	30.9	31.11	31.55	32.29	28.95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59.84	48.08	43.17	34.95	31.25	48.03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고문보수 개정폭(大阪市) (單位: %)

		연령	20~39歲以下	40~49歲以下	50~59歲以下	60~69歲以下	70세이상	불명	총평균
개정폭	5%미만		23.21	13.44	18.05	23.70	23.03	100.00	19.95
	10%미만		41.07	39.78	40.98	41.23	46.05	0.00	41.63
	15%미만		7.14	12.90	14.63	11.85	7.24	0.00	11.58
	20%미만		16.07	20.43	14.63	13.27	13.82	0.00	15.52
	20%이상		12.50	13.44	11.71	9.95	9.87	0.00	11.33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참고】 「세리사사무소 개요·세리사보수 실태에 관한 앙케이트 실시결과보고서」
(2000년(平成12) : 긴끼세리사회)

● 독자적인 보수규정(全国) (单位: %)

		第5回調査	第6回調査	内、近畿
		2004年	2014年	
설정 상황	마련되어 있다	28.5	32.3	29.1
	마련되어 있지 않다	68.4	64.3	67.7
	무기입	3.1	3.4	3.2
	총계	100.00	100.00	100.00

● 독자적인 산정기준(全国) (单位: %)

		第6回調査	内、近畿
		2014年	
산 정 기 준	구 보수규정을 참고	67.3	64.2
	시간제	5.2	5.3
	종량방식	15.1	18.0
	기 타	6.9	8.3
	무회답	5.5	4.2
	총계	100.00	100.00

※시간제 방식이란, 업무처리에 요하는 시간수를 기준으로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량방식이란, 서류작성건수·처리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 「제 6 회

세리사실태조사보고서」 (2014년 (平成 26) :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세리사 보수규정을 재검토 중, 세리사가 의뢰자에게 청구하는 보수는 합리적이고 명료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선택사항인 시간요금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후 검토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세리사 보수규정을 활용하는 회원은 동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특정 세목에 한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포함해도 7 할 이상이었으나, 동 규정의 폐지 후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보수규정을 정하는 회원 중, 동 규정을 참고하는 회원 6 할 이상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볼 뿐, 세리사 보수산정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대처 반영하는 회원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세리사보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량 등 외, 관여 거래처의 기업규모 등도 관련되어 있다. 보수개정을 사례에 있듯이, 디플레가 계속 되는 정세에서는 그 정기적인 개정조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고문보수 산정기준

(單位: %)

연령		20~39歲以下	40~49歲以下	50~59歲以下	60~69歲以下	70歲以上	불명	총평균
산 정 기 준	관계처의 기업규모	23.61	24.64	26.71	26.59	30.94	50.00	26.62
	관계처의 지급능력	24.31	25.83	24.72	28.29	23.38	0.00	25.57
	관계처의 희망액	16.67	16.11	15.67	14.39	17.27	0.00	15.80
	업무량, 난이도	35.42	32.46	32.23	29.02	26.62	0.00	30.84
	기 타	0.00	0.95	0.66	1.71	1.80	50.00	1.17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참고】 「세리사사무소의 개요·세리사 보수실태에 관한 양케이트 실시결과보고서」

(2000년 (平成 12) : 긴끼세리사회)

2. 업무광고에 관한 준수사항

(1) 광고의 자유화

1998년 (平成 10) 이후의 규제완화에서, 경쟁정책의 일환으로 당 업계에서 보수규정의 폐지와 더불어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 「광고규제의 자유화」이다

종래의 광고에 대하여, 개정 전 綱紀規則에서는 업무위촉간청이나 직책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등 제한사유가 망라적으로 덧붙여진 광고규제가 이루어졌다.

이중에는, 보수규정과 관련하여 보수의 제한 외에 보수의 부당경쟁을 제한하는 규정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의 규제완화에서 광고 (Marketing Promotion) 는 이용자가 자기의 책임아래 자격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격자에 관한 정보제공으로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허위·과대광고 이외에는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회칙에서 규제한 세리사 등의 광고규제 대하여는 그 자유화를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검토 하에, 2001년 (平成 13) 세리사법 개정에 따라 회칙 등도 변경하여 綱紀規則도,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본회에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할 수 있게 원칙이 세워졌고, 별도로 광고에 관한 규정(회원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이라 한다.))에서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Negative List)하였다.

(업무광고)

제 24 조 회원은,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본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광고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참고】 現行綱紀規則 (발췌)

(금지된 광고)

제 3 조 회원은, 다음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 (1) 사실과 다른 광고
- (2) 오도 또는 오인우려가 있는 광고
- (3) 과대 또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4) 특정회원 또는 회원의 사무소와 비교하는 광고
- (5) 법령 또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혹은 본회회칙 및 규칙에 위반하는 광고
- (6) 세리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참고】 회원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발췌)

(2) 회원의 광고관련 본회의 조치

회원의 업무광고에 대하여 현재 본회는, 광고규정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배제 등)

제 10 조 본회는 광고를 한 회원에 대하여 전조의 기록 등의 제출요구 외에 소요 조사를 할 수 있다.

2. 회원은 전항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광고가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우려가 있을 때에 본회는, 광고를 한 회원에 대하여 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전항에 의거 증명을 요구 받은 회원은,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해당 광고가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본회는, 이 규정에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배제,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본회는, 당해 회원이 전항의 명령 기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당해 행위의 중지, 배제 혹은 개선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행위에 따른 피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전항의 명령 기타 조치한 사실 및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다.
7. 본회는, 다른 세리사회의 회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회원이 소속한 세리사회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할 수 있다.

【참고】 회원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발췌)

「보수할인, 저비용보수, 상담료할인」 등의 저렴한 보수를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계약 후에 당초금액을 대폭적으로 내리도록 예정된 경우에는 「과대 또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제 3 조 제 3 호)가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당해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본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배제할 수 있다.